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부에 보훈 관련 국제 교류·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과 보훈기금의 운용 및 보훈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유골·시신 또는 영현(英顯)의 안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 및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00. ~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부령 제 호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3항 중 “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”을 “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국제 교류·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331”을 “33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27”을 “329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34”를 “35”로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52”를 “53”으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334”를 “33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30”을 “33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36”을 “37”로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52”를 “53”으로 한다.

별표 12 중 총계 “9”를 “1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”를 “11”로 하며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2”를 “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	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<u>보훈</u>	③ ----- ----- <u>보훈</u>
<u>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</u> 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<u>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</u> , 국제 교류·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은 -----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
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31</u>	<u>333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27</u>	<u>329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34</u>	<u>35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<u>52</u>	<u>5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]

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34</u>	<u>336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30</u>	<u>332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36</u>	<u>3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임업 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	<u>52</u>	<u>5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2]

국립이천호국원 공무원 정원표(제2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9</u>	<u>11</u>	+2
일반직 계	<u>9</u>	<u>11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임업 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	<u>2</u>	<u>4</u>	+2
·	·	·	
·	·	·	